

특별구민세, 도민세, 산림환경세(주민세)



귀하의 주민세가 현재 체납 상태이므로 최고서를 송부합니다

◆ 특별구민세, 도민세, 산림환경세(주민세) 납세의무자

특별구민세, 도민세 및 산림환경세(이하 '주민세'라 함)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 또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다치구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아다치구에 주소를 두고,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자
- (2)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아다치구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자

◆ 최고서란

주민세를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독촉장 발송 후에도 납부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나 근무처 등의 재산 조사를 실시한 뒤 재산 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고서 송부는 재산 압류에 앞서 발송되는 최종 경고입니다. 따라서 최고서를 받으신 분은 지체 없이 미납된 주민세 전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아다치구청 납세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아다치구는 납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 141 조, 제 142 조, 제 146 조의 2, 지방세법 제 20 조의 11, 제 298 조

아다치구 납세과 직원은 체납자의 거래 은행이나 근무처 등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갖고 있으며,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후, 예금 및 급여 조회 등 재산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신속하게 체납 처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체납 처분의 철저한 실행(압류)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 331 조

【압류의 주요 사례】

- (1) 예 금 : 체납자의 예금 계좌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미납된 세금에 충당합니다.
- (2) 급 여 : 체납자의 급여에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에 따라 압류하여 징수하고, 미납된 세금에 충당합니다.
- (3) 생명보험 : 체납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을 압류하고 해약합니다. 해약 후 해약환급금을 징수하여 미납된 세금에 충당합니다.

※ 압류는 사전 예고 없이 집행됩니다.

※ 압류로 인해 귀하의 사회적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아다치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원래의 납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최고서에 명시된 지정기한 이전이라도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연체금에 대하여

주민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326 조 등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최고서에 기재된 연체금은 최고서 발부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납부일 기준으로 연체금이 재산정되므로, 납부 시점에 따라 새로운 연체금이 발생하거나 기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세금을 이미 납부한 분에게도 연체금만을 청구하는 최고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하신 경우

아다치구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데 2~3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차에 따른 행정 처리상의 차이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납부 누락을 방지하려면

(1) 특별징수로 변경 (급여소득자에 한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매월 급여에서 분할 공제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직장에 문의해 주십시오.

※ 최고서에 기재된 미납 금액은 특별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경자동차세(종별할당분)는 특별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좌이체로 변경

계좌이체의뢰서(엽서 형식)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아다치구 내 구민사무소 또는 아다치구청 납세과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 납세과 수납관리계(0 3 - 3 8 8 0 - 5 2 3 8)

◆ 문의처

1 전화

납세과	체납정리제 1 계	(0 3) - 3 8 8 0 - 5 2 3 6
	체납정리제 2 계	(0 3) - 3 8 8 0 - 5 2 3 7
	체납정리제 3 계	(0 3) - 3 8 8 0 - 5 2 3 5
	아다치구 외 전출자	(0 3) - 3 8 8 0 - 5 3 4 5

※ 잘못된 번호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가 서툰 분은 통역 오퍼레이터를 포함하여 3 자 간 통화가 가능합니다(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최대 20개 언어에 대응).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 창구

아다치구 납세과 (아다치구청 중앙관 1 층)

【접수 시간】 오전 8 시 30 분 ~ 오후 5 시(휴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제외※)

※ 매월 넷째 주 일요일(2025 년 12 월은 둘째 주 일요일)에는 '휴일 납세 상담'을 실시합니다.

【접수 시간】 오전 9 시 ~ 오후 4 시

※ 창구에서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번역기를 이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